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270호 2017. 6. 12(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9호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82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 공고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93호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94호 공시송달공고 ----- 4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03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도서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 공고 ----- 43

차 례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07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소공원) 결정(최초)
입안을 위한 공고 ----- 47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 49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1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 50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20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78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 - 69호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18호(2014.02.17.)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원 가좌주공2차아파트주택재건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경미한 변경)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서구 도시재생경관과(☎032-560-459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 6.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가좌동 308번지 일원	75,024.7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m ²)	구 성 비 (%)	비 고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5,024.7	100.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격				기 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	2	32	30~33	주간선 도로	8,081.0	도화동 대2-4	부천시 구역계	일반 도로	11,22, 32호 광장	경고제160호 (1976.7.8.)	
기정	중	3	122	12~23	집산도로	901.9	대2-32	대2-35	일반 도로	-	인고제73호 (1977.3.31.)	
기정	소	1	1	12~15	국지도로	456.7	대2-32	중3-122	일반 도로	-	경고제206호 (1976.8.11)	
기정	소	3	10	6	국지도로	192.6	중3-122	소1-1	일반 도로	-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주차장①	노외 주차장	가좌동 309일대	450.2	-	조성후 무상귀속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24	주공2단지 공원	어린이 공원	가좌동 309일원 일대	1,500.4	-	조성 후 무상귀속

④ 도시계획시설(녹지)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녹지①	녹지	경관녹지	가좌동 308일원 일대	1,924.0	-	조성 후 무상귀속
기정	녹지②	녹지	경관녹지	가좌동 309일원 일대	1,613.6	-	조성 후 무상귀속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법정기준	
기정	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주택건설 기준등에 따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8조
	주민 공동 시설	경로당			상동55조
		문고			상동55조
		보육시설			상동55조
		휴게소			상동29조
		어린이놀이터			상동46조
		주민운동시설			상동53조
		근린생활시설			상동50조
	경비실	-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가좌주공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75,024.7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33	1	-	32	-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 적(m ²)	명 칭	면적(m ²)						
변경	가좌주공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75,024.7	획지1	25,143.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99%이하	250%이하	90m이하		
			획지2	38,164.4		21.99%이하	250%이하			
			획지4	450.2	노외주차장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7	450.1	교육연구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8	619.9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1,2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4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의5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획지7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8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 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저촉되는 행위 및 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의 60%이상을 85m ² 이하로 건설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획지1	북서측 대로2-32호선 남서측대로 중로3-122호선 남동측 소로2-1호선 북측인접대지 경계선 동측 인접대지 경계선		폭5m 지정 폭5m 지정 폭3m 지정 폭5m 지정 폭3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획지2	북서측 대로 2-32호선 북측 중로3-122호선 북동측 중로3-122호선 남측 소로3-10호선 서측소로1-1호선		폭5m 지정 폭3m 지정 폭5m 지정 폭5m 지정 폭5m 지정							
완화적용기준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37.6% + 지하주차장계획 10% = 257.6% - 계획용적률 : 250%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 주택건설 등)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법적상한용적률: 250%이하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 등에 관한 계획(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가좌주공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75,024.7	획지1	25,143.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99%이하	250%이하	90m이하		
			획지2	38,164.4		21.99%이하	250%이하			
			획지4	450.2	노외주차장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7	450.1	노유자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8	619.9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구분			계획내용				
			획지1,2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4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의5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획지7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8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 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저촉되는 행위 및 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의 6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획지1	북서측 대로2-32호선 남서측대로 중로3-122호선 남동측 소로2-1호선 북측인접대지 경계선 동측 인접대지 경계선		폭5m 지정 폭5m 지정 폭3m 지정 폭5m 지정 폭3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확보				
획지2		북서측 대로 2-32호선 북측 중로3-122호선 북동측 중로3-122호선 남측 소로3-10호선 서측소로1-1호선		폭5m 지정 폭3m 지정 폭5m 지정 폭5m 지정 폭5m 지정						
완화적용기준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37.6% + 지하주차장계획 10% = 257.6% - 계획용적률 : 250%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 주택건설 등)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법적상한용적률: 250%이하							

※ 획지 3의 어린이 공원, 획지 5와 획지6의 경관녹지는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5에 1』 개정(2011.07.01)에 따른 “평균18층 이하” 계획삭제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 등에 관한 계획(변경)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환경보전계획

검토항목	검토 결과	환경영향	대책 및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토양포장 우수유출	○ 토양포장, 우수유출 다소 변화 예상	토양포장도 감소 보도, 주차장 등을 자연 상태의 토양으로 유지하거나 투수성 포장재 사용 우수유출량 감소	-	
	지형변동 절·성토 균형	○ 절·성토 발생 및 미미 한 지형변화 예상	지형변화 최소화 절·성토의 균형을 고려하여 토량의 외부 유출, 내부유입 최소화 표토(비옥토)유실 방지로 표토층 선 확보 및 적정 장소 적치로 조경수 식재용으로 재활용	-	
	녹지변동 녹지체계	○ 녹지화 증가 예상 녹지대 연결 필요	녹지면적(공원 및 녹지)의 증가로 녹지화 를 증가 시킬 것으로 예상됨 사업지구 주변의 자연요소와 상호·유기적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녹지대를 고려함에 따라 도심지 녹지 활용도 측면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습지보전	×	-	-	-
	비오톱	○ 비오톱 유형 변화 비오톱 공간 증가예상	비오톱 유형 변화 비오톱 공간 증가예상	사업시행 후 사업지구의 비오톱 유형은 불 투수 포장 비율이 70%미만인 공동주택지로 의 변화예상 녹지면적 확보로 동·식물의 미 서식지인 비오톱 공간 증가가 예상됨	-
바람	×	-	-	-	
에너지	○	에너지 소비 증가예상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단지조성	-	
환경오염	×	-	-	-	
경관	○	고층의 높은 경관으로 변화	주변 건축물 및 인근 주거지와 스카이라 인을 고려하여 층고 계획 수립	-	
휴식 및 여가공간	×	-	-	-	
시행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	비산먼지, 폐기물, 공 사장 소음문제 등 발생 등 예상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 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공사 시 적정 처리계 획 수립·시행	-	
※검토결과 :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영향 예상됨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역 내 대부분의 도로는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이 안전하지 못한 실정 또한, 주차장의 부족으로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이 협소하므로, 응급 시 비상차량의 진입이 어려움. ◦ 따라서, 보차분리, 가감속 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 동선의 최소화를 위해 단지 내 차량동선을 지하로 유도하여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 유지 ◦ 재해발생시 소방용 차량 등의 비상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비상차량 진입동선계획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또는 응급상황에 대처가 용이하도록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
화재 및 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가좌주공2차아파트는 재난에 취약한 구조의 건축물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지진 등의 재해발생시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음. ◦ 대상지는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이를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의 벽식 구조로 건설을 하며, 내화재료 사용 및 내진설계를 통한 설계시행이 필요
홍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 ◦ 따라서,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 사업구역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홍수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집중호우 시 역류에 의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수관망계획을 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 방음판넬(7m)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공사 시 학생 및 교직원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비산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 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 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기정)

결정 구분	면 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75,024.7	획 지 1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25,143.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 2		38,164.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 3		1,500.4	공원
		획 지 4		450.2	주차장시설
		획 지 5		1,924.0	녹지
		획 지 6		1,613.6	녹지
		획 지 7		450.1	노유자시설
		획 지 8		619.9	근린생활시설(준치용지)
		-		5,158.3	도로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면 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변경	75,024.7	획 지 1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25,143.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 2		38,164.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 3		1,500.4	공원
		획 지 4		450.2	주차장시설
		획 지 5		1,924.0	녹지
		획 지 6		1,613.6	녹지
		획 지 7		450.1	교육연구시설
		획 지 8		619.9	근린생활시설(준치용지)
		-		5,158.3	도로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변경없음

①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②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해당 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변경없음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2)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 시 동법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 공급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① 기존수목현황

구분	수종	규격	수량	이식 가치	구 분	수종	규격	수량	이식 가치
1	감나무	3.5H × R10	17	상	11	단풍나무	4.5H × R15	60	중
2	감나무	4H × R12	58	중	12	느티나무	4H × R10	25	하
3	감나무	4.5H × R15	30	상	13	느티나무	5H × R15	11	상
4	감나무	5H × R15	46	하	14	벚나무	3.5H × R12	23	상
5	은행나무	3.5H × R10	67	하	15	벚나무	4H × R15	35	하
6	은행나무	4H × R13	30	상	16	벚나무	5H × R20	28	중
7	은행나무	5H × R18	63	중	17	벚나무	5.5H × R20	18	중
8	은행나무	6H × R22	67	중	18	목련	4.5H × R20	12	중
9	단풍나무	3H × R7	24	상	19	목련	5H × R15	11	상
10	단풍나무	3.5H × R7	63	중	20	목련	6H × R18	12	중
조경수목 총계 700주 중 이식가치 “상” 146주									

② 기존수목활용 계획

구분	수목 활용 계획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는 도심지내에 속하여 있고 주변지역 역시 도심지로서 환경부 법적 보호종 및 보호수 등은 조사되지 않음 ◦본 사업지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 비오톱·조경 부지를 제외하면 특별한 녹지는 존재하지 않음 ◦사업지구의 녹지 자연도는 시가지·나대지(DGN 1등급)지역인 것으로 산정됨 ◦본 사업지구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지역에 식재된 조경 수목은 은행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목련, 느티나무 등 약 총 700주가 분포하고 있음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내 분포하는 조경 수목 중 수종, 수형 및 이식비용과 공사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시가지 “상” 상태인 146주의 이식수종을 선정·재이식하여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임 ◦사업지구 내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함 ◦사업지구 내 조경녹지, 놀이터 등을 계획하고, 미 서식처를 마련할 계획임

14)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

② 지하 주차장 계획(단지 내)

- 비상차량의 지상주차장을 제외한 전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계획
- 주차장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한 진출입램프 주요지점에 경고등 설치

15) 관련서류

-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782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43호(2017.04.2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도시관리 계획【시설:주차장, 사업명:주차장 설치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6.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17-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 주차장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	1	주차장	서구 가좌동 217-31번지 일원	1,736.7	서구고시 제2017-43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 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본관4층 도시개발과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용지조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연번	지번	지목	지면적 (㎡)	면적비율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	217-31	장	784.9	784.9	성목순외5인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198-1				
2	217-32	장	255.2	255.2	성형제외1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9, 105동 303호(고안동, 대진아파트)	서인천농업협동조합	서구 신흥동 283-3	근저당권 지상권	
3	217-33	대	248.1	248.1	김정목	서구 건지로318번안길 13-1 (가좌동)	가좌2,3,4동새마을금고	서구 가좌동 217-11	근저당권	
4	217-34	장	352.2	352.2	김병일	계양구 새말로 89, 101동 707호 (효성동, 성지아파트)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동 51(회현동1가)(용현동지점)	근저당권	
5	217-35	도	94.3	94.3	성목순 외8인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198-1	서인천농업협동조합	서구 신흥동 283-3	근저당권	
6	217-36	장	2.0	2.0	이현호	서구 오류동 78-1				
계				1,736.7						

<지장물조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연번	지번	지목	물건의종류	구조	토지소유자		물건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217-31	장	주택	세외/콘크리트블록,토담벽	성목순외5인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198-1			
2	217-32	장	재배작물	고추,파,콩등	성형제외1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9, 105동303호(대진APT)			
3	217-33	대	주택	연와조/스라브	김정목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318번 안길 13-1(가좌동)	김정목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318번 안길13-1(가좌동)	
4	217-34	장	공장	일반철골구조	김병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말로 89,101동 707호(성지APT)	김병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말로 89,101동707호(성지APT)	
5	217-31	장	한전주	전주번호: 8662 534 7 R4 L4	성목순외5인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198-1	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사	인천시 서구 심곡동 254-9	
6	217-34	장	체신주	-	김병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말로 89,101동 707호(성지APT)	한국통신(KT) 서인천지사	인천시 서구 탁목로34번길 9	
7	217-12	대	담장	콘크리트 블록	김찬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328동 1306호			
8	217-23	장	담장	콘크리트 블록	오민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24번길 202동606호(주공아파트)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7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6.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사용료 변경)에 따라 현재 썰매장에서 사용 중인 서식으로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서식 정비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중전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중전 별지 제4호)서식 변경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 별지서식 정비에 따른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7. 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제출처로 제출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전화번호 : 032-560-4167 (FAX 560-2720)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사용료 변경)에 따라 현재 썰매장에서 사용 중인 서식으로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서식 정비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중전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중전 별지 제4호)서식 변경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 별지서식 정비에 따른 일부 개정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용권) 썰매장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권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동행시”를 “동행 시”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
2호서식”으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를 “발급
부를 비치하여야”로 한다.

제6조 중 “당일 사용권 판매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을 “그날 썰매장 운
영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다음날”을 “다음 날”로, “구금고에”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다음날에”를
“다음 날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다음해 2월말”을 “다음 해 2월 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 용 권(개인, 단체)

영수증(보관용)	영수증(고객용)	입장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입장일시
시설명	시설명	시 설 명
○○사용료 ○○명 ○○원	○○사용료 ○○명 ○○원	입장인원
발권번호	발권번호	사 용 료
현금	현금	할 인
카드	카드	
총액	총액	
일시	일시	

(별지 제2호서식)

사용권 수불부

일자	발권번호	계	어른	청소년	어린이	4인가족	장애인	단체20%	국 가 유공자	무료

(별지 제3호서식)

사용권 판매실적 보고서

구분	일자	요일	계	이용자수		운영수입	비고
				유료	무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 ①·② (생략) ③관리관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썰매장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그 <u>소속공무원</u> 을 지도·감독한다.	제2조(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소속 공무원</u> ----- -----.
제3조(사용권) <u>썰매장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권, 단체사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u>	제3조(사용권) <u>썰매장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권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u>
제4조(사용료 감면·면제자 처리) ①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본인은 자원봉사자 수첩을 지참 하여야 하며, 가족과 <u>동행시</u>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4조(사용료 감면·면제자 처리) ① ----- ----- ----- ----- ----- ----- ----- <u>동행시</u> ----- ----- -----.
제5조(사용권 관리) ① <u>사용권은</u>	제5조(사용권 관리) <삭 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권 판매실적 보고) 관리관은 당일 사용권 판매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날 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권 판매수입금) 관리관은 사용권 판매수입금을 다음날 12시까지 세입결의하여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구금고 휴무일에는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시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썰매장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생략)

② ----- 별지 제2호서식-----
----- 발급부를 비치하여
야 -----
-.

제6조(사용권 판매실적 보고) ---
---- 그날 썰매장 운영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 다음 날

-.

제7조(사용권 판매수입금) -----
----- 다음 날
----- 인천광역시
서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 다음 날-----
----- 다음 날에

제8조(사용시간) ① -----

----- 다음 해 2월 말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취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
(사용료)

- ①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임) (개정 2007.6.19)
 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수도권 지역의 동종사업장 사용료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때는 조례를 개정 사용료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6.7.8)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2)

[별표 2] (개정 2016.7.8)

사 용 료

시설명	기 준	요 금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할인요금	비 고
사계절썰매장 (야외풀장포함)	어 른	6,000원	3,500원	1회 입장 기 준
	청소년	4,000원	2,500원	
	어린이	4,000원	2,000원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7.06.08.~7. 03.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7.06.08.~7. 03.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793호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6.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 규칙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물품관리전환 합의시 규정된 최종 결재권자 변경사항 반영
(전결권자 : “부구청장” ⇒ “부구청장 또는 총무국장”)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7. 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제출처로 제출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전화번호 : 032-560-4167 (FAX 560-2720)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물품관리전환 합의시 규정된 최종 결재권자 변경사항 반영
(전결권자 : “부구청장” ⇒ “부구청장 또는 총무국장”)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1을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사무위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품의 취득
2. 제16조에 따라 불용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및 처분

제3조의 제목“(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를“(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기증품조서등)”을“(기증품조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주관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의”를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물품구입시”를 “물품구입 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상시”를 “항상”으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물품증”을 “물품 증”으로, “포함)후”를 “포함) 후”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을 “공유재산관리담당 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으로,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물품”을 “해당 물품”으로,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물품운용관)상호간”을 “(물품운용관)상호 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1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부구청장”을 “부구청장 또는 총무국장”으로, “의거 인계인수한다”를 “따라 인계인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을 “(기록을 생략하는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에 계기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요”를 “필요”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공유재산관리과정”을 “공유재산관리 과정”으로, “공사발생품중”을 “공사발생품 중”으로, “매각을 요하는”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직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물품검수조서등)”을 “(물품검수조서 등)”으로 하고, 같

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에 따른”으로,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0조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u> <u>시행규칙</u>	<u>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u> <u>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u> ----- ----- ----- ----- -----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u>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u>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u>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u>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u>	② <u>제1항-----</u> ----- ----- <u>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
<u>제2조의1(사무위임) 조례 제4조제2항</u> <u>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는 다음 각호에 의거한다.</u>	<u><삭 제></u>
1. <u>물품의 취득</u>	

2. 제16조 규정에 의한 불용물
품에 대한 불용결정 및 처분
<신 설>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출납명령)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

제2조의2(사무위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품의 취득
2. 제16조에 따라 불용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및 처분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 제8조에 따른 -----
----- 따른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 제11조에 따른 -----
----- 따
른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 제16조에 따른 -----
----- 따른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 제18조에 따른 -----
----- 따른다.

제8조(출납명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생략)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
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
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
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
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
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
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
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
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
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
야 한다.

② (생략)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
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

-----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따른다.

⑥-----

----- 따라 -----

제10조(물품의 청구) -----

-----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주관 과장-----
-----.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 제10조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③물품구입시 -----

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항상 -----

그 밖-----

②-----
-- 따라 -----
-----.

제13조(물품의 반납) ①-----
----- 물품 중 -----
----- 포함) 후 --

----- 따른 -----

② 공유재산관리담당 부서에서
는 공유재산관리 과정-----

----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

③ (현행과 같음)

④-----
----- 해당 -----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
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
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
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
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 실
·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물품
관리관의 물품을 관리전환(사용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물품운용
관)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
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
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

-----.

⑤-----

해당 물품-----
----- 따라

-----.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 따른 -----
----- (물품운용
관)상호 간-----
----- 제16조에 따라 -

-----.

②제1항에 따라 -----
----- 부
구청장 또는 총무국장-----

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 인수한다.

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계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 1. 2. (생략)
-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 출장소, 의회사무국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1. ~ 3. (생략)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4. (생략)

--- 따라 인계인수한다.

③-----
----- 제2항에 따라 -----.

제15조(기록을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

----- 필요-----.

- 1. 2. (현행과 같음)
- 3. 공유재산관리 과정-----
----- 공사발생품 중-----
----- 매각할 필요가 있는 --

제16조(불용의 결정) -----

----- 소속 직원-----

- 1. ~ 3. (현행과 같음)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 제24조에 따른 -----
-----.

- 1. ~ 4. (현행과 같음)

<p>제18조(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u>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u>의한다.</u></u></p>	<p>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 제28조에 따른 ----- ----- <u>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u> ----- ----- -- <u>따른다.</u></p>
<p>제20조(물품재고조사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u>의한다.</u></p>	<p>제20조(물품재고조사등) -- 제32조에 따라 ----- ----- ---- <u>따른다.</u></p>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7.06.08.~7. 03.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7.06.08.~7. 03.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7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2. 공고기간 : 2017. 06. 07. ~ 2017. 06. 22.(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위반건축물 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구 조	용 도	면 적(m ²)			
노○영	인천광역시 서구 산6-4번지	파이프조	창고	100.0	이행강제금 부과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43-1 지하*층	폐문 부재

6. 유의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연 2회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위반사항이 시정될지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32-560-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구청 또는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경우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803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도서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9-68호(2009.12.0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및 도서관, 사업명: 노외주차장 및 도서관 조성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 서류를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6.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39-3번지 일원
2.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	노외주차장	서구 가좌동 139-3번지 일원	1,848.9	감) 0.1	1,848.8	2009.12.09.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주차장	·주차장 변경 ·면적:기정-1,848.9㎡ 변경-1,848.8㎡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의 오차를 반영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도서관))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문화시설	어린이도서관	서구 가좌동 139-3번지 일원	990.0	증) 0.1	990.1	2009.12.09.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도서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문화시설	·문화시설 변경 ·면적:기정-990.0㎡ 변경-990.1㎡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의 오차를 반영

3.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도서관)
- 명칭 : 노외주차장 및 도서관 조성공사

5.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주차장 : A = 1,848.8㎡
- 도서관 : A = 990.1㎡

6.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주차관리과)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7.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0.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본관4층 도시개발과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807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소공원】

결정(최초) 입안을 위한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33번지 종전지대(코스모화학공장) 부지 내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소공원)결정(최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원 개요

- 위 치 : 서구 가좌동 556-33
- 시설명 : 도시공원
- 종 류 : 소공원
- 면 적 : 856㎡
-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 현황
 - 공원결정 : 2017.03.13. (인천서구 제2017-29호)

2. 조성계획 결정(최초) 입안사유

- 인천시 종전대지(코스모화학공장) 이용계획과 관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쉼터공간 확보를 위하여 소공원 신설

3.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서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주요도입시설 : 휴게공간, 광장 등
(공원조성계획 (최초) 조서 및 도면 등 관계도서는 공람 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2017.06.09.~2017.06.25.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032-560-4493)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6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6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1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타관”을 “그 밖의 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구의회사무국장”을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규정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분장반”을 “분장 받”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처리권한”을 “업무처리 권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를 “이”로, “공무원을”을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손해”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회계책임관: 총무국장

제3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

제3조제3항 본문 중 “기타 관서는 별표1”을 “그 밖의 관서는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청장”을 “구청장”으로, “기타관서”를 “그 밖의 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휴가·출장등”을 “휴가·출장 등”으로, “경우에는 ·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를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를 “구의회의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것으로서”를 “것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급여등”을 “급여 등”으로, 같은 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을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관서의 신설등)”을 “(관서의 신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무국장과 협의하여 한다.

제8조 앞에 “제 2 장 예 산”을 “제2장 예산”으로 한다.

제8조 앞에 “제 1 절 예 산 편 성”을 “제1절 예산편성”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서류외”를 “서류 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투자 심사”를 “투자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료제출시까지 당해”를 “자료 제출 시까지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증액조정”을 “증액 조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하며”를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구의회사무국장”을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장은”을 “장 및 통합지출관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법 제45조”를 “「지방재정법」 제45조”로, “구의회사무국장”을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50조제1항”을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 앞에 “제 2 절 예산의 집행”을 “제2절 예산의 집행”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구의회사무국장”을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집행·지출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구의회사무국”을 “구의회 사무국”으로,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세출예산 월별집행·지출계획서”로,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세출예산 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로, “구의회사무국”을 “구의회 사무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구의회사무국장”을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추가경정예산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를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으로”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구의회사무국장”을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지출원”을 “지출원과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추가경정예산등”을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변경배정”을 “변경하여 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구의회사무국”을 “구의회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세무1과장”을 “통합지출관, 세무1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가 목 중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를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로, “것으로서”를 “것으로써”로 하며, 같은 항 나목 중 “제조 및 용역

을 하게 하거나”를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로, “것으로서”를 “것으로써”로 하고, 같은 항 다목 단서 중 “국장이상”을 “국장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의회사무국”을 “구의회 사무국”으로, “위임전결한다”를 “위임 전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품의한도”를 “품의 한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기타관서”를 “그 밖의 관서”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무과장의, 구의회사무국”을 “재무과장, 구의회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91조제1항”을 “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경비외의 재정사항합의”를 “경비 외의 재정사항 합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예산외”를 “예산 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구재정”을 각각 “구 재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배정범위 내”를 “배정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요하는 것으로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해당수입”을 “해당 수입”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및 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구의회사무국장”을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1과장”을 “세무1과장 및 통합지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관 실·과장, 구의회사무국장”을 “통합지출관, 주관 실·과장,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명”을 “명령”으로, “지출내역”을 “이상 지출내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구의회사무국장”을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법 제50조”를 “ 「지방재정법」 제50조”로,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4항”을 “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으로,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세무1과장과 구의회사무국장”을 “통합지출관, 세무1과장과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구의회사무국장”을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신설·변경등”을 “신설·변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의회사무국장”을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지출원”을 “지출원, 통합지출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구의회사무국장”을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의회사무국장”을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며, “및 지출원에게”를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로 한다.

제30조 앞에 “제 3 장 결 산”을 “제3장 결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은 법 제53조 제4항”을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은 제1항. 제2항”을 “통합지출관은 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9조의2”를 “영 제12조”로, “영 제59조의3에”를 “영 제14조를”로 한다.

제31조 중 “구의회사무국장”을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32조 앞에 “제 4 장 수 입”을 “제4장 수입”으로 한다.

제33조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 기한”을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써 다음 연도 1월 20일”로,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영 제19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5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납세고지서 :”를 “납세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납입고지서 :”를 “납입고지서:”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납부서 :”를 “납부서:”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별지 제27호서식) :”을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한다.

제38조 중 “영 제78조”를 “영 제23조”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의하지”를 “따르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 중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를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영 제84조”를 “영 제30조”로, “다음달”을 “다음달”로 한다.

제47조 앞에 “제 5 장 지 출”을 “제5장 지출”으로 한다.

제47조 앞에 “제 1 절 총 칙”을 “제1절 총칙”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각 실·과장, 구의회사무국장”을 “통합지출관, 각 실·과장,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구의회사무국장”을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세무1과장은 해당부서”를 “통합지출관은 해당 부서”로, “구의회사무국장”을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1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구의회사무국장”을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세무1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해당관서”를 “해당 관서”로 한다.

제49조 중 “세무1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회계관계법규”를 “회계관계 법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출원(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을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으로 하며, 같

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5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법 제90조”를 “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관서”를 “그 밖에 관서”로, “즉시이체”를 “즉시 이체”로 한다.

제5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4조”를 “영 제53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따른 자금배정

제50조의4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임무”를 “통합지출관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비 및 집합지급은”을 “경비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건비중”을 “인건비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정·도말”을 “정정하거나 지우거나”로 한다.

제52조제5항 전단 중 “관할세무서에”를 “관할 세무서에”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을 “경우에”로, “만한”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로 한

다.

제55조제1항 중 “선급급, 송급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를 “선급급 지급에 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2회이상”을 “2회 이상”으로, “관계증빙서류”를 “관계 증빙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1매”를 “한 장으”로, “교부금액 등”을 “교부금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56조 중 “(송급·집합)지급명령(별지 제52호의2서식)”을 “(계좌·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을 “(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2호서식)”을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으로,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를 “잃어버려 없어진 경우에”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를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때도 또한”을 “때도”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1조제1항 본문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품의시”를 “품의 시”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소속관서”를 “소속 관서”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받은자”를 “받은 자”로, “종료후 5일이내”를 “종료 후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97조 제2호”를 “영 제45조제2호”로 한다.

제68조 앞에 “제 2 절 수입대체경비”를 “제2절 수입대체경비”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영 제27조”를 “영 제26조”로 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세무1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무1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1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관계서류”를 “관계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06호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 및 세무1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 앞에 “제 3 절 대체수지”를 “제3절 대체수지”로 한다.

제71조제1호 중 “회계간”을 “회계 간”으로, “동일회계내”를 “동일 회계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아닌자”를 “아닌 자”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절차등”을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제75조 앞에 “제 4 절 세입세출외현금”을 “제4절 세입세출외현금”로 한다.

제75조제3호 중 “기타(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밖의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을 요하는”을 “반환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당해자치단체외”를 “해당 자치단체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사용내역”을 “사용 내역”으로 한다.

제80조 중 “반환을 요하는”을 “반환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83조 중 “보관중”을 “보관 중”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영 제104조제1항”을 “영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 앞에 “제 5 절 출납원”을 “제5절 출납원”로 한다.

제87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 외”를 “경우 외”로, “책임하”를 “책임 하”로 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0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93조 중 “망실하였”을 “잃어버렸”으로, “기타”를 “그 밖의 지출”로 한다.

제94조제1항 중 “망실의”를 “잃어버렸음을”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전일”을 “전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회하”를

“입회 하”로, “연서날인후”를 “연서날인 후”로 한다.

제97조 중 “기타”를 “그 밖”으로,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로 한다.

제98조 중 “소관사무”를 “소관 사무”로 한다.

제99조 앞에 “제 6 절 금 고”를 “제6절 금고”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를 “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3조”를 “영 제49조”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2조와 제103조”를 “영 제48조와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구금고는 구와 당해”를 “구금고: 구와 해당”으로, “작성한다.”를 “작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구금고수납대행점은”을 “구금고수납대행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작성한다.”를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구금고지출대행점은”을 “구금고지출대행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작성한다.”를 “작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구공금지급대행점은”을 “구공금지급대행점:”으로, “승낙한다.”를 “승낙”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집무하계”를 “근무하계”로 한다.

제106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을 “현금지급명령을”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한다.

제110조 중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11조를 삭제한다.

제112조제1항제2호 중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를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상이한”을 “서로 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상이한”을 각각 “서로 다를”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을 “(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현년도”를 “현연도”로 한다.

제115조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관계장부”를 “관계 장부”로 한다.

제116조제1항 중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 그 다음날”을 “따라 그 다음 날”로 한다.

제117조제1항 중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한다.

제118조제3항 중 “의하여 그 다음날”을 “따라 그 다음 날”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감독”을 “관리·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무1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1조 앞에 “제 6 장 계 약”을 “제6장 계약”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신용카드를”를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로, “통한 구매의”를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으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5조 앞에 “제 7 장 계산증명”을 “제7장 계산증명”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정, 삽입”을 “정정·삽입”으로, “자수를 난외”를 “글자 수를 가까운 빈공간”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기타표지”를 “그 밖의 표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등 현금으로”를 “등을”로, “영수인에 대하여”를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로 한다.

제129조제1항 본문 중 “기타에”를 “등에”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연도, 회계명,”을 “동일회계 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장부”를 “관계 장부”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매분기”를 각각 “매 분기”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본청 재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같은 항 중 “매분기말 익월”을 “매 분기말 다음 달”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본청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132조 중 “구청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3조 후단 중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을 “분임출납원에게”로 한다.

제134조의 제목 “(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를 “(출납원 변경 시의 계산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질되었”을 “변경되었”으로, “계산과 병산하여”를 “계산에 더하여”로 한다.

제13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자로 하여금”을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자로 하여금”을 “자에게”로 한다.

제137조의2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해”를 “따른”으로 한다.

제1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한다.

제146조 앞에 “제 8 장 장 부”를 “제8장 장부”로 한다.

제146조제2항 중 “이중 1개”를 “이 중 한 개”로 한다.

제149조제2항제3호 중 “매월말”을 “매월 말”로 한다.

제150조제1항 중 “법 제91조”를 “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6조의2에”를 “제96조의2 및 영 제63조에 따라”로 한다.

제151조 앞에 “제 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를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로 한다.

제151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2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4조제2항 중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한다.

제155조제2항 중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보 칙”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으로 한다.

제156조를 제164조로 한다.

제157조를 제165조로 한다.

제158조를 제166조로 한다.

제159조를 제167조로 한다.

제160조를 제168조로 하고, 제156조부터 제16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2.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제157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구청장은 구 본청과 의회, 구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관리한다.

-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 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58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일괄로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계약체결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재정보증기간 중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분으로 불입된 보험료를 후임자에게 승계토록 한다.

제159조(재정보증한도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같음한다.

제160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58조에 따라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1조(보증보험증권의 권리)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

무원에게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험증관 및 관계 서류를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62조(보험료 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지출한다.

제16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2.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4조 앞에 “제11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52-2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7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이 규칙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 기간	예산액	공 사 비			시 도 비			보 상 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 용 액	12월 말 현 재 공 정	완 예 정	공 일	이월사유					

< 별지 제34호서식 >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주	성명		
	등록번호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과오납금반환통지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주	성명		
	등록번호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인
금고	귀하		

과오납금반환명령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주	성명		
	등록번호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인
금고	귀하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주	성명		
	등록번호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 별지 제35호서식 >

금고 귀하

원 부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①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①	
징수관	귀하		

<별지 제52-2호서식>

(계좌·현금) 지급 명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 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구분	지급명령 번호	채주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융 기 관 명	계좌번호 예금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구분란에는 송금과 집합 지급명령을 표시.
2. 집합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집합지급 합계금액과 항목별 금액을 각각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3.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54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집 행 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 액	비 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 성 목	통 계 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별지 제60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

위 탁 서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 증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납 입 통 지 서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 증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결재	기 장
	취급자
	출납원
	과 장

영 수 증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 증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별지 제62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반 환 청 구 서

제 호	년 도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td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현금</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유 가 증 권</td></tr> </table>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결	취급자	출납원	과 장
재			

반 환 통 지 서

제 호	년 도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td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현금</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유 가 증 권</td></tr> </table>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			
위와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반 환 필 통 지 서

제 호	년 도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td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현금</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유 가 증 권</td></tr> </table>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6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20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한다)제4조”를 “한다) 제4조”로, “상”을 “상·하반기 정기대관 일정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관일정”을 “대관 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허가내용”을 “허가 내용”으로, “이전”을 “전”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건”을 “한 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연·영화:”를 “공연·영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시: 30일
3. 행사: 3일

제4조제2항 중 “허가기간”을 “허가 기간”으로, “영화에 대하여”를 “영화”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신청 별지 제6호서식”을 “신청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에 대하여”를 “신청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사안내”를 “행사 안내”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사전허가”를 “사전 허가”로, “필한”을 “마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입장금액, 일련번호”를 “전산티켓으로 입장금액, 일련번호 또는 좌석번호 등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종시설물”을 “각종 시설물”로, “사용자에게는”을 “사용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익일”을 “다음 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점검책임자”를 “점검 책임자”로 한다.

제11조 중 “대소구”를 “대소도구”로, “징수품목과 금액을 내부지침”을 “징수 품목과 금액을 내부 지침”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자체운영규정)”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체운영규정”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